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1-62호

2021년 충남 지역혁신(소셜벤처)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남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지역혁신(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06. 11.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 목적

가. 충남 지역혁신(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 내 소셜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

나.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혁신가 및 소셜벤처 창업가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및 동기를 통한 지역 사회 혁신·역량 강화

❑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충남 지역혁신(소셜벤처)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1. 6월 ~ 2020. 11월

다. 지원대상 : 충남 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라 함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벤처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라. 지원규모 : 7~8개팀(팀별 최대 10,000천원 / 창업 단계별 차등지원)

마. 우대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벤처기업 인증 기업 / *가점 부여

마. 지원내용

ㅇ 시제품 제작 지원 [재료비, 디자인(설계/목업), 외주제작비 등]

ㅇ 지적재산권 등재 (특허비 등)

ㅇ 기업 마케팅 홍보비(홍보물, 홍보동영상 등) 등 서비스 지원 항목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가.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1) 예정 사업장 주소지가 충남 지역인 예비창업자

2) 충남 소재의 창업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No	구분	내용
1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예비창업팀은 반드시 2개월 이내 충남지역 내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2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14년 6월 10일 이후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충남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단, 타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최종선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

나. 모집대상

ㅇ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벤처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 사회가치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 또는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조건

다. 공고 및 접수방법

ㅇ 공고기간 : 2021. 06. 11.(금) ~ 06. 25.(금)

ㅇ 접수기간 : 2021. 06. 11.(금) ~ 06. 25.(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라. 지원 내용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 고
교육/포럼	◦ 교육(20시간 내외): BM개발, 사업계획 수립, 기업가 정신 등 ◦ 포럼: 소셜벤처 트랜드, 사업모델 발표 및 피드백, 네트워킹	필수
멘토링	◦ 1:1멘토링 : 사업모델 구체화, 세무, 법률, 지식재산권, 투자, 시장성·기술성 평가 등 ◦ IR피칭훈련 등	선택
사 업 화	◦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홍보, BM전략수립 컨설팅, 임대료 등 (창업지원금)	최대 10,000 천원
투자유치	◦ IR데모데이 / 투자유치 설명회(충남혁신센터 프로그램 연계) - 충남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	선택

바. 신청제외 대상

ㅇ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 (시효 소멸자는 제외)

ㅇ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ㅇ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충청남도로부터 창업 관련 금전지원 및 유사한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

ㅇ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나 사업모델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ㅇ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위법행위 등)

❑ 선정방법

사업공고 및 접수 (6.11~6.25)		서면 평가 (6.29)		대면 평가 (7.1)
신청기업 → 충남혁신센터	⇨	서류평가 (적격성평가)	⇨	대면(발표)평가

협약체결 (7.5~)		사업화 지원 및 수시점검 (7~11월 중순)		사업비 정산 및 최종 평가 (11월 말)
선정기업 - 충남혁신센터	⇨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현황 등	⇨	사업비 회계정산 및 최종결과물 평가

가. 서면평가(서류) :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나. 대면평가(발표) :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팀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ㅇ 가점사항 : 평가기준 참조

다. 사업협약 : 충남혁신센터-선정기업 간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지원

ㅇ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 필요

라. 수시점검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수시점검 (사업 전문인력)

마. 최종평가(발표) : 최종결과물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도, 사업수행 활동 등 평가

4. 선정자의 의무(유의사항)

가.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2개월이내 창업(개인·법인)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충남지역에 창업기업을 유지해야함

나. 기창업자(7년 이내)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충남지역에 소재해야 함.

다. 선정자는 협약 종료년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라.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자에 있음

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타 시도로 소재지 이전 할 경우, 충남혁신센터 및 충청남도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접수 및 문의

가. 접수 및 문의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파일명 통일(지역혁신(소셜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류_성명_팀명) 후 아래의 메일로 제출

ㅇ 문의 : 창업운영팀 조관영 / 041-536-7887

ㅇ 접수 : 이메일 접수 / ckyshoo@ccei.kr

나. 제출서류

▸ 아래서류 순번대로 총 1세트 구성 제출 / 파일(메일 및 USB)
① 체크리스트 1부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HWP + PDF 2종으로 제출) ③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각 1부 ④ 예비창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홈텍스) / 팀원전체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팀원전체 각 1부 ⑤ 창업기업(7년이내)인 경우 -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전년도 매출증빙(재무재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 1부 ⑥ 기타(인증, 특허, 포상, 현지계약 예정 및 수출실적 등 / 해당시) 증빙서류 1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기준[소셜벤처 육성사업, 소셜벤처판별기준]

항목	
사회성	혁신성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1]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2]되어 있고, 추진[3] 중인 기업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4]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5]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6]으로 확인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7]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8]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9]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10]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기업(또는 재단)[4]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11]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투자기관 단체의 회원일 것
2)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3)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4)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5)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6)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 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7)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함
8) 글로벌 소셜벤처기업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겟인더링(Get In the Ring), GSEA(Global Student Entrepreneur Award) 등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말함.
9)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10) K-스타트업(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글로벌리그) 또는 舊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본선이상 입상자, 지식재산 정보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11)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창출(35)		사회적 미션의 명확성(정관명시 또는 구체성)	10
		중요성과 범위(중요성과 시급성, 가치창출 범위)	10
		가능성(해결방법 구현 가능성, 협업 및 협력체계)	15
경제적 가치창출(35)		사업의 혁신성(기술,사업모델)	15
		사업의 수익성(수익창출 계획 달성 가능성, 매출/수익)	10
		사업의 성장가능성(시장잠재력,사업영역 확장)	10
팀 역량 (30)		열정(사회적 기여 열정, 문제해결 역량, 의견수렴/통합)	15
		전문성(지식/경험/노하우, 리더역할 경험)	15
소 계(A)			100점
가 점	지역기여도 (3)	충남지역 사회적 문제해결	2
		일자리 창출 기여도	1
	경 력 (4)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벤처기업 인증 기업	2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마루나비 포함) 입주 기업	1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소셜벤처 경진대회 수상자	1
	매 출	전년도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기업	1
	투 자	투자유치실적 보유기업	1
	특허, 실용신안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출원제외)	1
가 점(B)			10점
총계(A+B)			110점